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대구대학교와 경산시
업무협약서

경산시

대구대학교와 경산시는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인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으로써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비호동산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첫째, 대구대학교는 비호동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과 활용·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한다.

둘째, 경산시는 대구대학교의 비호동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해 일정 규모의 시설투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협약기간과 구역은 다음과 같다.

- 협약기간: 2018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5년)
- 협약구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비호동산 인근 지정 구역)

넷째, 기타사항은 별첨한 세부 협약서에 따른다.

2018년 3월 19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장 홍덕률

홍덕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경산시

시장 최영조

최영조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비호동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 세부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경산시 간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약의 명칭은 ‘비호동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협약’이라 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경산시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서 체결한다.

제4조(협약대상구역) 본 협약의 대상구역은 대구대학교 부지 내 지정 구역으로 한다.

제5조(협약의 대상물) 본 협약은 학교 부지 내 비호동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따라 식재되는 수목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이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하거나 대학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과 의무) ① 대구대학교 지정 구역 내에 4개월간(2018년 3월 ~ 2018년 6월)에 걸쳐 비호동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단, 조성기간 중 대구대학교 및 경산시는 주요 공정별로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경산시는 공사부터 운영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유아숲 체험원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기 전까지 관리 및 유지보수한다.

③ 대구대학교는 지정구역 내에서 불가피한 학교시설 증축 등 여건 변화가 있을 시에는 경산시와 사전협의하여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이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경산시는 유아숲 체험원이 운영시작 함과 동시에 이용하는 기관 정보를 매월 5일까지 대구대학교에 제공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알린다.

(일반적인 운영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 운영시간은 09:00~18:00 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매년 초 대구대학교와 협의 한다.)

⑤ 경산시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련 보험에 가입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한하여 이용신청을 받으며, 유아 25명당 1명 이상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⑥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 대구대학교와 협의하여 유아숲지도사에 상응하는 관리인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경산시는 비호동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사항을 사진 등 기록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⑧ 경산시는 유아숲 체험원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중 유아숲 체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

⑨ 경산시는 인프라 조성 기간 중 주요 사안(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등을 포함하여 대구대학교가 요청하는 경우)진행 전에 대구대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협약자는 협약구역, 협약의 대상물, 지원과 의무, 협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합의로 그 취지와 내용을 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 체결 후 협약의 내용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대학교와 경산시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구대학교와 경산시는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